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845
------------	-----

2023년 6월 21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김혜지 의원 외 52명

나. 제안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

-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3년 6월 2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혜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현행 30% 범위에서 50%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호텔 등 숙박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경감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 (재난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현행 30% 범위에서 50% 범위로 상향 조정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3. 6. 8. ~ 2023. 6. 12.
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-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1) 교통정책과-9640호('23.6.14.)

- 본 개정은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,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경감비율을 상향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
- 다만,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, 대중교통 운영 등 주요 교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, 실제 경감 시행 시 경감비율 등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
 - ※ '23년 기준,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조 6천억 원 중,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액은 2,232억 원으로, 약 14% 차지
 - ※ 경감비율 30% → 50% 시행 시 : 세입 최대 약 480억 원 감소 예상
 - ※ '20년 코로나 15% 일괄경감 당시 약 297억 원(추산) 경감 실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2)에 따라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시에 동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의 범위를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3)는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

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3)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)

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

- 근거 :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부과대상 : 도시교통정비지역(인구 10만 이상 도시) 내 연면적 1천㎡이상 시설물 소유자
- 산정기준 : 부담금 =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× 단위부담금(㎡) × 교통유발계수
 * 교통유발계수 : 공장(0.47) ~ 백화점(10.92)
- 부과기간 : 전년도 8. 1. ~ 해당년도 7. 31 / 납부기간 : 매년 10. 16. ~ 10. 31

○ '23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은 35,610개소이고, '22년까지 연도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'20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중 약 14% 정도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충당⁴⁾하고 있음

※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및 징수액 현황

(단위:백만원, 당해연도 말 기준)

연 도	2022	2021	2020	2019	2018
시설물수	35,551	35,571	35,369	34,467	34,560
징 수 액	239,285	234,472	166,146	178,516	158,501

○ '20년 4월 정부는 「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」 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를 요청⁵⁾하였음

4) '23년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조 6천억원중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액은 2,232억원으로 약 14% 차지

5) 코로나19 대응 관련 '교통유발부담금' 경감 조치 등 적극 협조요청(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-2672호, '20.4.9.)
 -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% 이상 경감
 -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은 유지
 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에 대

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계획 수립⁶⁾을 통해 '20년 10월 현행조례 제6조의2를 신설⁷⁾ 후 '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의 15%를 일괄 경감한 바 있고, 이러한 감면조치로 인해 '20년 한 해 약 297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⁸⁾하였습니다

- 동 개정조례안의 적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범위가 50%까지 확대될 경우 심각한 재난 발생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자영업자,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

다만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'20년도 코로나19 감면사례를 고려해 경감비율을 15%에서 50%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연간 700억원의 세입 감소를 추계하였고, 서울시는 경감비율을 30%에서 50%로 변경할 경우 최대 약 480억원의 세입 감소될 것으로 추계⁹⁾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

- 한편 현행조례 제6조의2의 취지가 코로나19 등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, 기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나, 통계청

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

6)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추진계획(안)(교통정책과-12383호, 2020.7.23.)

7) 서울특별시조례 제7688호, 2020. 10. 5., 일부개정·시행

8)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

(서울시 내부자료)

징수건수 (건)	징수예상액 (백만원)	징수액 (백만원)	15%경감액 (백만원)	경감액/건 (천원)
76,265	195,885	166,146	29,739	390

9)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에 관한 의견 제출(교통정책과-9645호, '23.6.14.)

조사결과¹⁰⁾ 실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산업별로 매출감소 또는 증가 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

특히 호텔업의 경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¹¹⁾하였으며, '20년 현행 조례 제6조의2 신설시 입법 예고 기간중 한국호텔업협회가 “호텔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50%이상의 감면을 적용이 필요하다”는 의견을 제출¹²⁾한 바 있어 향후 개정조례안 적용시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경감 정도의 차등화 또는 매출증가시 경감제외 등 세부적인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-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㎡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

10) 통계청(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) :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

- 산업별 중소기업 '19년 대비 '20년 매출 증감률

(단위 : %)

산업	예술·여가 스포츠	숙박· 음식점	교육 서비스	광업	사업 시설관리	개인 서비스	제조업	운수 창고	보건· 사회복지
증감률	-18.1	-14.6	-12.5	-7.9	-7.6	-6.9	-2.1	-1.9	-1.7
산업	도소매	건설업	수도·하수 ·폐기물	농림 어업	전문·과 학·기술	정보 통신	금융 보험	전기·가 스·증기	부동산
증감률	-1.2	-1.2	1.0	5.6	6.9	7.6	14.1	17.6	22.6

11) 코로나19發 일자리 충격, 1년6개월 새 호텔노동자 4명중 1명 직장 잃어 :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 자료('20.12.30)

- '19.3~'20.9 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은 3억8,532만원에서 2억141만원으로 47.7% 감소

12) 의안번호 제1731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입법예고결과 의견 요약서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중 “30%”를 “50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<u>30%</u>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%</u> ----- -----.</p>